



제18852호 2016. 9. 28.(수)

【조 약】

○조약제2310호(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4

【부 령】

○해양수산부령제202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

【고 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1호(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13
- 법무부고시제2016-290호(귀화허가) 18
- 환경부고시제2016-189호(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 29
- 고용노동부고시제2016-42호(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3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8호(건설신기술 지정)..... 34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0호(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3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1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47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7호(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66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2호(국적상실) 167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국적상실)..... 171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9호(국적상실)..... 171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3호(국적취득)..... 171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국적취득)..... 172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국적상실)..... 172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10호(국적상실)..... 17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0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173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5호(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173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항로표지 신설) 17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동해항대림A호등부표 외 3기 신설) 174

(이면 계속)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17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항로표지 현상변경)	17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사설항로표지 현황·현상변경)	17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2호(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17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7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77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9호(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0호(전자금융업 등록)	178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8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7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9호(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6호(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8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8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4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86
○문화재청공고제2016-283호(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8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3호(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9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4호(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9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9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93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6호(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194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7호(국유지상 지장물 재 이전 조치 요구 공시송달)	9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1호(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19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19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3호(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19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197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6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9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공시송달)	1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16-2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200
--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211호(초성천 하천구역 및 폐천관리계획 일부변경)	202
○충청북도고시제2016-243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02
○경기도공고제2016-5780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203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6-52호(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203

나.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안 제61조제5항)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 및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미납액 충당 방안 마련(안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미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림산업(주)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③ (주)삼호

나. 전화번호 : ① 02-369-4179 ② 02-880-7053 ③ 02-2170-574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1호

3. 명칭 : 삼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지그재그로 등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삼입형 평면 트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2.02.06 ~ 2017.02.0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6-28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